

의안번호	2214384
의 퇴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5.11.21.
추계번호	25D6257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4 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의 작성) 및 제8 조의5(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결 산서의 작성) 신설	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 획서”라 함)를 작성하고,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함 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”라 함)를 작성하고, 법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의4(온실 가스감축인지 기금 운용계획서의 작 성) 및 제8조의5 (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
기금결산서의 작성·제출(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)
 - 현재 「국가재정법」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
예산서(또는 기금운용계획서) 및 결산서는 작성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
는 지방재정 관계 법률이 부재함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과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집행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·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등 이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인력 증원 또는 평가를 위한 연구·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이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,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·결산제 운영 관련 조례가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등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lmhy@nabo.go.kr